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별 법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개시 준비 기간을 정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안 제5조 내지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제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법 제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u>중증장애인</u>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는 공단에 해당 <u>중증장애인의</u>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 ----- <u>장애인</u>----- ----- -----. ② ----- ----- <u>장애인</u>-----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연 락 처	(044) 202 - 3193